

## 용역사업 보안점검표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태
용역사업 착수 및 입찰시	중요 정보화 사업은 제안요청서 작성시 보안결재 비공개로 분류	제안요청서상 보안내용 미기재
	입찰 공고 이전에 보안관리가 필요한 자료·장비에 대해 투입이전에 관련 법규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필요한 요구사항을 마련	해당없음
	입찰 공고 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 불이익 등에 대해 정확히 공지	○
	제안서 평가요소에 보안관리 계획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수행계획의 타당성 검토	○
	웹호스팅 등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시 정보보호시스템 구비 및 보안 관리 가능 여부 검토	해당없음
용역사업 계약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과업지시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될 수 있도록 중요항목(보안조치·누출금지대상·제재조치)을 정확히 기술	○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	하도급 불허사업
	대외보안 필요시 사업수행계획서에 비밀정보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